



소통하는 의정  
공감받는 의회

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
(제1차 교육위원회)  
2021. 1. 20.(수) 10:00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: 2021년 1월 11일

○ 회부일자: 2021년 1월 12일

3. 제안이유

- 2021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국가정책수요, 지역현안수요 증원 반영과 교육행정수요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개정 (안 제2조)

1) 지방공무원 총수: 3,348명 → 3,402명 (+54명)

○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 개정 (안 제4조, 별표3)

1) 일반직: 3,020명 → 3,070명 (+50명)

○ 5급이하: 2,980명 → 3,030명 (+50명)

2) 교육전문직원: 308명 → 312명 (+4명)

○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:  
270명 → 274명 (+4명)

## 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 수를 3,348명에서 3,402명으로 54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세부 증원 내역은 아래와 같음.

직종	수요별	정원					세부내역		
		본청 (단위회)	직속	지역	학교	계	내용	인원	비고
일반직	국가정책	7	1	1		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미래형 혁신학교 운영지원</li> <li>유아 NEIS 구축·운영</li> <li>교육분야 성폭력 근절 지원</li> <li>그린 스마트 미래학교</li> <li>초중등 온라인 인프라 구축</li> <li>학교 감염병 대응</li> <li>'21년 교육청 정보보호</li> <li>유치원 급식관리</li> </ul>	1명	
								1명	
								1명	
								1명	
								1명	
								2명	
								1명	
								1명	
	지역현안			9		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충북행복교육지구</li> <li>학교정보화지원</li> </ul>	1명	
								8명	
자체수요	6(2)	4	13	9	32(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본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설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임용제도 변경 2명</li> <li>충청권교육감정책협의회 간사업무 1명</li> </ul> </li> <li>속기</li> </ul> </li> <li>도의회: 의회사무처 (운영위원회, 입법정책담당관)</li> <li>직속: 센터신설 4명 (S/W 체험센터, 환경교육체험센터)</li> <li>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교학점제 업무 이관</li> <li>사립학교 시설업무 지원</li> <li>그린스마트스쿨 등 시설사업 추진</li> </ul> </li> <li>학교: 학급수 변동 및 신설 통합학교 기준 변경</li> </ul>	3명		
						1명			
						2명			
						3명			
						1명			
						5명			
						4명			
						4명			
9명									
소계	13	5	23	9	50				
전문직	국가정책	2				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미래형 원격수업 등 지원</li> </ul>	2명	장학사
	자체수요			2		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교학점제 업무 지역 이관</li> </ul>	2명	장학사
소계	2	0	2	0	4				
국가정책	9	1	1		11				
지역현안			9		9				
자체수요	6	4	15	9	34				
합계	15	5	25	9	54				

- 세부 증원 내역 중 고교학점제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5명을 증원하는 것과 관련하여, 이관하는 고교학점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문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 5명을 증원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  
- 본 조례 개정안의 다른 부분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